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1. 2. 3 선고 2020가단22581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유한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성원

변론 종결 2021. 1. 20

판결 선고 2021. 2. 3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3지분에 관하여,가. 피고와 D 사이에 2019. 7. 25.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
나. 피고는 D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20. 1. 23. 접수 제17489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소외 주식회사 E는 D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. 4. 26. 자 2012 차전 19883호지급명령(2012.5.15.확정)에기한'24,629,425원및그중7,453,330원에대한2012 . 5. 1. 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% 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'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. 원고는 2014년 11월경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.

나. F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 이 사건 부동산') 을 소유하다가 상속인으로 자 녀인 G, D, 피고(각 상속분 1/3)를 두고 2019. 7. 25. 사망하였다.

다. 피고는 2020 . 1. 23. * 2019 . 7. 25. 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' 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위 상속재산 분할협의(이하 '이 사건 분할협의'라 한다) 당시 D 명의의 특별한 재산은 없었다.

【인정근거】다툼 없는 사실, 갑 제P4, 8호증의 각 기재,이 법원의

금천구청장,금천세무서장,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,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사해행위의 성립

1)피보전채권

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존재하고 있던 원고의 D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2)사해행위 및 사해의사

D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,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D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으므로, 이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.

또한 D는 이사건분할협의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,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.

3)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피고는, ① 망 F가 2000 년 4월경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수자금 대부분을 대출받았는데, 피고 가 2002년 4월경 그대출금을 변제하면서 망 F로부터 이사건부동산을 사실상 증여 받았고, ②채무자인 D는 이 사건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이미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돈을 사용하였으므로, 피고는 선의라고 주장한다.

그러나 을 제 1, 2호증, 갑 제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,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로인하여 D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.

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나.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

결국이 사건부동산중 1/3지분에 관하여, 피고와 D사이에 체결된 이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 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기국 2020. 1. 23. 접수제 17489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등 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, 이를 받아들여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이영광

별지